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0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김예지 · 김상욱 · 서미화

최수진 · 김소희 · 박덕흠

신성범 · 정성국 · 최형두

김대식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 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 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2
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u>	<u>제19</u> 조제1항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u><</u> 삭 제>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	<u><삭 제></u>
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	⑤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	
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운영을 위</u>
	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